1953. 11. 3.
제 3 종우편물인가

관보

편집 및 발행 총 무 처
전 화 70—4331
인 쇄 대한공론사
대 표 전 화 75—6161~4
판 보 부 직 통 75—6315

제 6319 호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1972. 12. 4. (월)

BA0 192311

차 례

오늘의 중요지표

○대통령각하지시(1972. 12. 2) ····· 3

각 란

고 시

○건설부고시제506호(도로구역변경) ····· 4
○건설부고시제507호(도로구역변경) ····· 4
○건설부고시제508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협의) ····· 4
○건설부고시제510호(토지수용사업인정) ····· 4
○건설부고시제511호(토지수용사업인정) ····· 5
○건설부고시제512호(토지수용사업인정) ····· 5
○체신부고시제274호(전화가입구역변경) ····· 5
○체신부고시제275호(전화가입구역변경) ····· 6
○체신부고시제276호(전화관서종류변경) ····· 6
○체신부고시제277호(전화관서종류변경) ····· 6
○중부국토건설국고시제40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 ····· 6
○영남국토건설국고시제34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 ····· 6

공 고

○농림부공고제461호(제17회수의사국가시험실시) ····· 6
○상공부공고제7,230호(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 7
○상공부공고제7,231호(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 7

지방행정

○서울특별시공고제272호(일단의공업단지〈제 2 단지〉조성사업조건부준공) ····· 8

(이면 계속)

회람								

2503 A—1—4
1969. 1. 31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m² 154

사 령
○인사발령 ····· 8

회 보 란
○제 1 회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공고(외무부) ····· 9
○공시최고 ····· 9
○제권판결 ····· 20
○판 결 ····· 24
○공무원사망(총부처) ····· 24

오늘의 중요지표

대통령 각하 지시(1972. 12. 2)

비상국무회의시

박정희 대통령은 2일 상오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대통령 각하 지시

모든 공직자는 새해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한번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철저히 아껴써야 된다는 정신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연말에 가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이 있다고 하여, 긴급치 않은 용도에 써 버리는 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내역(계속 사업은 제외)을 감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확인시킬 방침이니, 각 부처는 이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라.

끝.

고 시

◉건설부고시제506호

도로구역변경에관한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1972년11월30일

건 설 부 장 관

구분 / 구역	노선명	구간	총연장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현 구 역	여수—청주선 (일반국도제17호)	대덕군 산내면 삼괴리	254			
변 경 구 역	〃		280		도로공사로 인한 노형개량으로 인함	

※ 도면은 충청남도 건설국 도로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건설부고시제507호

도로구역변경에관한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1972년11월30일

건 설 부 장 관

구분 / 구역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현 구 역	거제—울산선	고성군 고성읍 송학동244-14-동외동 29-14번지	750M		도로공사로 인한 노형개량으로 인함	
변 경 구 역	〃	고성군 고성읍 479번지-동위동 270-2번지	750M		〃	
현 구 역	〃	창원군 창원면 용전리 556-2번지-소답리 205-2번지	1,630M		〃	
변 경 구 역	〃	〃	1,430M		〃	
현 구 역	목포—부산선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993-2번지-655-2번지	806M		〃	
변 경 구 역	〃	〃	680M		〃	
현 구 역	〃	창원군 진북면 지산리 109-2번지-69-32번지	1,391M		〃	
변 경 구 역	〃	〃	1,207M		〃	
현 구 역	진해—청주선	창원군 대산면 제동리 359-32번지-265-11번지	648M		〃	
변 경 구 역	〃	〃	533M		〃	

※ 도면은 경상남도 건설국 도로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건설부고시제508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2년11월30일

건 설 부 장 관

협의일자	점용장소	수면종류	점용면적	목적	점용기간	공작물 설치 시행청
1972. 11. 30	경남 마산시 마산수출자유지역 전면	해면	10,980m² (3,321평)	수출용 수산식품 냉동가공공장설치	1972. 11. 30부터 1975. 11. 30까지	마산 수출자유지역 관리청장

◉건설부고시제510호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한다.

1972년12월 1 일

건 설 부 장 관

1. 기 업 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기석

4

2. 사업의종류 : 도로사업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
3. 사업예정지 :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신상동 지내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면적(평)
경북 경산군 진량면 신상동	977	대	78
〃	979-1	임야	1,046
〃	980	전	587
〃	984-1	임야	73
〃	1052-1	〃	6,073중 110
계	5필지		1,894평

◉건설부고시제511호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한다.

1972년12월 1일

건 설 부 장 관

1. 기 업 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2. 사업의종류 :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 (서울남봉천국민학교신설용지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봉천동지내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면적(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봉천동	76-1	전	531
〃	76-2	〃	354
〃	73-1	대	612평중 230
〃	79-1	전	622평중 240
계	4필지		1,355평

◉건설부고시제512호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한다.

1972년12월 1일

건 설 부 장 관

1. 기 업 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2. 사업의종류 :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 (중량중학교 신설용지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69번지 지내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면적(평)	비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69가	대	156.5	
〃	69나	대	182.8	
계	2필지		339.3	

◉체신부고시제274호

전신전화규정 제2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 가입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년11월29일

체 신 부 장 관

1. 변경사항

전 화 가 입 구 역 (확장지역)

국명	시도명	시군명	읍면명	동리명번지
속초우체국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11번지부터 27의 1 번지까지, 36번지부터 73의 8 번지, 74의 2 번지, 74의 4 번지, 79번지, 95의 1 번지, 99의 1 번지, 101번지부터 107번지까지, 116의 4 번지부터 116의 5 번지까지, 117의 3 번지, 121번지, 122번지, 124의 1 번지, 126의 2 번지, 127의 2 번지, 220의 1 번지, 221번지, 222의 3 번지, 223의 1 번지, 223의 8 번지, 223의 9 번지, 223의11번지, 223의13번지, 237의 1 번지부터 237의 2 번지까지, 237의 5 번지부터 237의 6 번지까지, 240번지부터 291의 4 번지까지에 한한다.

2. 시행년월일 : 1972년11월23일

◉체신부고시제275호

전신전화규정 제2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 가입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년11월29일

체 신 부 장 관

1. 변경사항

전 화 가 입 구 역(확장지역)

국명	도명	시군명	읍면명	동 리 명 및 번 지
영춘	충북	단 양	영 춘	상리일원 하리일원

2. 시행년월일 1972년11월27일

◉체신부고시제276호

전신전화규정 제326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의 종류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년11월30일

체 신 부 장 관

1. 변경사항

국 명	현급지	변경급지
강 진	4급지	5급지
김 녕	2급지	3급지

2. 시행년월일 : 1972년12월 1 일

◉체신부고시제277호

전신전화규정 제326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의 종류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년11월30일

체 신 부 장 관

1. 변경사항

국 명	현급지	변경급지
배 돈	2급지	3급지

2. 시행년월일 : 1972년12월 1 일

◉중부국토건설국고시제40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허가하였기 고시한다.

1972년11월25일

중부국토건설국장

허가년월일	점용장소	수면의 종류	점용목적	면적	연장허가기간	피허가자의 주소, 성명
1972. 11. 25	인천시 동구 만석동 98의 6 번지	해면	선착장 설치	234평	1973. 11. 16	인천시 중구 송월동 3가 3 김 명 선

1972년11월20일

영남국토건설국장

◉영남국토건설국고시제34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허가년월일	점용장소	수면 종류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1972. 11. 20	경북 월성군 감포읍 감포리 384의 7 지선	해면	30. 7평	급유시설	1972. 11. 4부터 2개년간	대구시 중구 태평로 2가 4 한일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영수

공 고

◉농림부공고제461호

수의사법 제 8 조 및 수의사시험령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수의사 국가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2년12월 1 일

농 림 부 장 관

1. 응 시 자 격 : 수의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다.
2. 시험실시장소 : 수험표 교부시에 통지함.
3. 시험실시일자 : 1973년 2 월28일
4. 시 험 과 목 : 수의전염병학, 수의외과학, 수의산과학, 수의위생학, 수의약리학, 수의내과학
5.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수의사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서류(사진 3 매)

(1973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할 것)

6.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1973년 2월19일부터 1973년 2월 24일까지(6일간)
나. 제출장소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농림부축산국가축위생과 종합청사 306호실)
7. 응 시 료 : 수의사시험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소정금액(정부수입인지 500원)
8. 수험표 교부
응시원서 접수시 교부함.
9. 합격자발표
1973년 3월19일 종합청사 게시판에 게재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송부함.
10. 기 타 : 문의사항은 수의사국가시험 위원회에 문의할 것.
(전화 : 70-2916 가축위생과)

◉상공부공고제7, 230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공고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기 공업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한다.

1972년12월 1 일

상 공 부 장 관

허 가 번 호 : 제724호
제 조 업 체 명 : 부산전기공업사
대 표 자 명 : 이홍기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9-3
규 격 번 호 : KS C 8302
품 명 : 소켓
종류또는등급 : 키소켓 6A300V(코오드용, E26)
허 가 번 호 : 제725호
제조업체명 : 부산전기공업사
대 표 자 명 : 이 홍 기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9—3
규 격 번 호 : KS C 8305
품 명 : 콘센트 및 플럭
종류또는등급 :
콘센트 15A 150V(2극, 매입형 2개용)
콘센트 15A 150V(2극, 각형 2개용)
꽂임플럭 3A 150V(2극, 코오드부)
꽂임플럭 6A 150V(2극, 코오드부)
꽂임플럭 10A 150V(2극, 코오드부)
꽂임플럭 15A 150V(2극)
허 가 번 호 : 제726호
제 조 업 체 명 : 부산전기공업사
대 표 자 명 : 이 홍 기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9—3
규 격 번 호 : KS C 8309
품 명 : 옥내용소형스위치류
종류또는등급 :
텀블러스위치6A 300V(1극 원형)
텀블러스위치 6A 300V(1극 매입형)
눌름보턴스위치 3A 150V(1극)
풀스위치 1A150V(1극)
펜단트스위치 3A 150V(1극)
허 가 번 호 : 제727호
제 조 업 체 명 : 부산전기공업사
대 표 자 명 : 이 홍 기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9—3
규 격 번 호 : KS C 8315
품 명 : 로우제트류
종류또는등급 : 나사로우제트 6A 250V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공부공고제7, 231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공고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윤성공업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한다.

1972년12월 1 일

상 공 부 장 관

허 가 번 호 : 제728호
제 조 업 체 명 : 윤성공업사
대 표 자 명 : 서기병
소 재 지 : 전라북도이리시인화동 1 가78번지
규 격 번 호 : KS C 8302
품 명 : 소켓
종류또는등급 : 키소켓(코오드용 E26) 6A300V
키소켓(칼끝이 입이달린것 E26) 2극 6A 150V
분기소켓(칼끝이 입이 1개 달린 2분기 E26) 2극 6A 150V
분기소켓(칼끝이 입이 2개 달린 1분기 E26) 2극 6A 150V
램프용 리셉터클(E26) 6A 300V
허 가 번 호 : 제729호
제 조 업 체 명 : 윤성공업사

대 표 자 명 : 서기병
소 재 지 : 전라북도이리시인화동1가 78
규 격 번 호 : KS C 8305
품 명 : 콘센트 및 플럭
종류또는등급 : 꽂임플럭 2극 15A150V
콘센트(원형) 2극 15A 150A
콘센트(매입형) 2극 15A 150V
콘센트(각형) 2극 15A 150V
콘센트(노출각형 2개용) 2극 15A 150V
콘센트(노출각형 3개용) 2극 15A 150V

허 가 번 호 : 제730호
제조업체명 : 윤성공업사
대 표 자 : 서기병
소 재 지 : 전라북도이리시인화동1가 78
규 격 번 호 : KS C 8309
품 명 : 옥내용소형스위치류
종류또는등급 : 텀블러스위치(원형) 3A 150V
텀블러스위치(매입형) 6A 300V
펜탄트스위치 3A 300V

허 가 번 호 : 제731호
제조업체명 : 윤성공업사
대 표 자 명 : 서기병
소 재 지 : 전라북도이리시인화동 1가 78
규 격 번 호 : KS C 8315
품 명 : 로우제트류
종류또는등급 : 나사로우제트 6A 250V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 방 행 정

◉서울특별시공고제272호.

일단의공업단지(제2단지)조성사업조건부준공도시계획사업안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조건부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2년11월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준 공 조 건 : 준공검사후 즉시 공공요지 기부채납을 필하여야 하며, 이것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이 준공검사는 취소한다.
2.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45번지외 196필지
3. 사 업 명 :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4. 준 공 면 적 : 120,432평
5. 사업시행자 :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최 명 헌
6. 사 업 기 간 : 1968. 2. 8~1969. 7. 31
7. 준 공 도 면 : 별첨(공고안에는 생략).

사 령

O인 사 발 령

◉1972년12월 1일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무과장)
서 기 관 이 시 방(李 時 芳)
부이사관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이 사 관 장 인 숙(張 仁 淑)

문교부 체육국장에 보함
(문교부 체육국장)
이 사 관 황 천 성(黃 天 性)

서울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경북대학교 사무국장)
부 이 사 관 박 성 규(朴 性 圭)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충남대학교)
행정사무관 왕 정(王 淳)

서기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충남대학교 사무국 경리과장에 보함
(전남대학교)
행정사무관 김 정 현(金 正 鉉)

서기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전남대학교 사무국 총무과장에 보함
(대구교육대학)
행정사무관 박 재 동(朴 再 東)

서기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8

경북대학교 사무국 총무과장에 보함

철도청공전
국　　장　　이　극　호(李 極 浩)
공업부기감

공업기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철도국장
부 이 사 관　　배　영　진(裵 榮 鎭)

부산철도국장
부 이 사 관　　차　동　환(車 東 煥)

영주철도국장
부 이 사 관　　양　주　철(梁 周 喆)

부산공작창장
부 이 사 관　　조　성　호(趙 誠 鎬)

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박　기　영(朴 奇 煐)

조건부의무기정에 임함

국립의료원 의료부 세균과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휘　　보

○외 무 부

제 1 회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공고

1972년 시행 제 1 회 4 급을류 외무직 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2년11월30일

외 무 부 장 관

1. 최종합격자명단(별항)
2. 임용후보자등록
   가. 기간 : 1972년 12월 1 일～12월 5 일(4 일간, 일요일 제외)
   나. 장소 : 외무부 총무과 인사계(중앙청 본관519호실)
3. 임용후보자등록시 구비서류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기재된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에 의할 것.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배부장소 : 외무부 총무과 인사계)

응시번호	성	명
19	김	주 훈
26	도	계 승
27	황	준 연
33	정	주 헌
44	금	병 욱
57	민	태 식
59	오	기 철
74	정	화 현
103	정	병 건
112	박	신 웅
130	김	경 헌
148	정	덕 소
200	정	신 구
205	김	정 기
220	박	동 민
223	손	경 락
231	심	유 상
275	이	명 규
306	김	욱 주
376	이	춘 희
400	이	시 영
405	이	승 희
410	전	형 수
432	조	성 용
465	박	종 문
499	김	재 범
509	도	영 석
538	노	영 우
603	한	재 철

(계 29명)

○공 시 최 고

72. 카. 12,0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88의 7

신청인　박　용　부(朴 勇 夫)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매
1. 번　　호　정액 다 00181993호
1. 액　　면　금 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2 월26일
1. 지급인 및 발행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본점영업부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9

72. 카. 14, 46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74의 13

신청인 김 미 자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바 311020
1. 액 면 금 10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8 월 1 일
1. 발 행 인 김미자
1. 지 급 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영업부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5, 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5 가 384

신청인 최 재 진(崔 在 珍)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2 월 21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ㄷ) 809835
1. 액 면 금 80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10월 12일
1. 지 급 인 국민은행본점영업부
1. 발 행 인 신청인

---

72. 카. 17, 3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8의 1

신청인 조 정 자(趙 貞 子)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1352207
1. 액 면 금 50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11월 11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서교동지점
1. 수 취 인 신청인

---

72. 카. 17, 418

부산시 중구 대창동 2 가 32

신청인 보림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기 식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주권 2 매
1. 번호및액면

번 호	액 면
ㅁ 28	금 100, 000원정
ㅁ 29	금 10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9 월 17일
1. 발 행 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422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 가 3 의 106

신청인 이 기 두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

다.

1972년11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매
1. 번　　호 A가 2242584가
1. 액　　면 금 48,533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9월 8일
1. 발행인및지급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영업부

---

72. 카. 17, 4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가 106의 43

신청인 이 종 애(李鍾愛)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 00887231
1. 액　　면 금 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0월11일
1. 발 행 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성북동예금취급소 지점장대리 이 진 승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463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1의10

신청인 박 태 만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기치일 No. 475973
1. 액　　면 금1,0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9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 행 인 김 완
1. 지 급 인 중소기업은행동대문시장사무소
1. 수 취 인 원천희
1. 소 지 인 박내만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기치일 No.829
1. 액　　면 금1,0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4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 행 인 박수남
1. 지 급 인 동대문시장동명직물
1. 수 취 인 원천희
1. 소 지 인 박내만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기치일 No.11
1. 액　　면 금9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2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 행 인 이 암
1. 지 급 인 동대문시장동남직물
1. 수 취 인 원천희
1. 소 지 인 박내만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5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566의 1

신청인

동일체강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상준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1

1. 번 호 바 N-412136
1. 액 면 미기입
1. 발행년월일 미기입
1. 발행인및지급인 동일제강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상준
1. 발행지및지급지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조흥은행방산지점
1. 수 취 인 주식회사 조흥은행방산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5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곡동 353의11

신청인 권 영 훈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844660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1일
1. 발 행 인 조흥은행종로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684310
1. 액 면 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1일
1. 발 행 인 조흥은행종로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5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81

신청인 황 인 화(黃 麟 和)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7014590~7014619(30매)
1. 액 면 금300,000원정(금10,000원정 30매)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3일
1. 발행인및지급인 한일은행남대문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5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213의26

신청인 김 수 영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4매
1. 번호및액면

번 호	액 면
가 1552351	금262,300원정
가 1552352	금 69,100원정
가03733488	금 10,000원정
가03733489	금 1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3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및지급인 서울은행본점영업부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634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인동 3

신청인 강 규 철(姜 圭 哲)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6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F 5954754	금 10,000원정
F 5954755	금 10,000원정
F 5954756	금 10,000원정
F 5954757	금 10,000원정
F 5954758	금 10,000원정
F 5954759	금 1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1일
1. 발행인 및 지급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성동지점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6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53의 5

신청인 박 상 목(朴 商 睦)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매
1. 번 호 나 1241010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5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광화문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64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3동 383의23

신청인 서 재 돈(徐 載 敦)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491469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4 월 6 일
1. 지급인 및 발행인 국민은행정능예금취급소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69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1의 1

신청인 유 한 호(柳 漢 晧)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T—191373
1. 액 면 금30,000원정
1. 발행인 및 지급인 주식회사 조흥은행반도지점
1. 발행년월일 1972년10월30일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729

경북 대구시 북구 산격동 1033

신청인 김 성 광(金 盛 光)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어가 B170224
1. 액 면 금5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12일
1. 지급년월일 1972년 9 월10일
1. 지 급 인 조흥은행동대문지점
1. 발 행 인 김호진(金好振)
1.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어가 B170225
1. 액 면 금5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12일
1. 지급년월일 1972년 9 월10일
1. 지 급 인 조흥은행동대문지점
1. 발 행 인 김호진(金好振)
1.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어가 B170226
1. 액 면 금8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12일
1. 지급년월일 1972년 9 월15일
1. 지 급 인 조흥은행동대문지점
1. 발 행 인 김호진(金好振)
1.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7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225의98
신청인 정 해 석(鄭 海 錫)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A1851447
1. 액 면 금128, 8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8 일
1. 발행인 및 지급인 중소기업은행세종로지점
1.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773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142의 3
신청인 이 정 애(李 貞 愛)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재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629741
1. 액 면 금5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9 월18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조흥은행남창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80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의 81
신청인 어 봉 용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보증수표 1 매
1. 번 호 524911

14

167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 7 일
1. 지급인 및 발행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청천동에금취급소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8,0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451의 77

신청인 박 경 애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송금수표
1. 번 호 1042648
1. 액 면 금40,000원정
1. 취결번호 12
1. 발행년월일 1972년 9 월19일
1. 지 급 인 순창군농업협동조합
1. 발 행 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수유지소

---

72. 카. 17,818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 가 145의 6

신청인 이 봉 우(李 鳳 雨)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4 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다00984970	금50,000원정
다00984971	금50,000원정
다00984972	금50,000원정
다00984973	금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8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 행 인 국민은행남창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8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내동 528

신청인 이 규 욱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1. 번 호 854071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1일
1. 지급인 및 발행인 제일은행중량교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87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9의 15

신청인 임 혜 선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No. 71-F 230845
1. 액 면 금3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16일 또는 17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 행 인 박중삼
1. 지 급 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동대문지점
1. 지급년월일 1972년 9 월30일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2. 카. 17, 8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57의 12

신청인 유 광 식(俞 光 植)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증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1098572
1. 액 면 금1,5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0일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용산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9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8의 87

신청인 이 준 건(李 俊 建)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증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2매
1. 번 호 다01049825호 1049824호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7일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오장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977

청주시 서운동 32의 3

신청인 이 광 영(李 光 永)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재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증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784968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22일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덕수지점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784971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22일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덕수지점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784972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22일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덕수지점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784974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22일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덕수지점

---

72. 카. 17, 9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159

신청인 왕 가 이(王 可 利)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증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6

1. 번 호 E2435751
1. 액 면 금200,000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0월14일
1. 발 행 인 한국상업은행광화문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7

신청인 오 정 숙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1198311라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8일
1. 발행인 및 지급인 상업은행효자동지점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8,00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의142

신청인 염 동 국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지18402
1. 액 면 금6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0월16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발 행 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1. 지 급 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을지로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8,007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의1

신청인 한국주택은행

은행장 이 상 덕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주택채권가종
1. 번 호 1
1. 액 면 금10,000원정
1. 발 행 인 한국주택은행영업부장
1. 발행년월일 1968년 6월17일
1. 지급지 및 지 급 인 한국주택은행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주택채권나종
1. 번 호 1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 행 인 한국주택은행영업부장
1. 발행년월일 1968년 6월17일
1. 지급지 및 지 급 인 한국주택은행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주택채권다종
1. 번 호 1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 행 인 한국주택은행영업부장
1. 발행년월일 1968년 6월17일
1. 지급지 및 지 급 인 한국주택은행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주택채권17회정호라종
1. 번 호 2164
1. 액 면 금1,000,000원정
1. 발 행 인 한국주택은행영업부장

17

1. 발행년월일 1970년 6 월13일
1. 지급지 및 지 급 인 한국주택은행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주택채권 6회차종
1. 번 호 690
1. 액 면 금5,000원정
1. 발 행 인 한국주택은행 영업부장
1. 발행년월일 1970년 9 월 1 일
1. 지급지 및 지 급 인 한국주택은행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2. 카. 18, 0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신청인 안 교 민(安 敎 敏)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 00147150라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4 일
1. 발행인 및 지 급 인 한국외환은행명동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7, 7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역촌동 26의130

신청인 염 석 주(廉 石 柱)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2월 1 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가Ⓑ1411483 가
1. 액 면 금500,000원정
1. 발 행 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외국영업부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4일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8, 0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0의1

신청인 김 용 진(金 用 珍)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2월 1 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가140969
1. 액 면 금600,000원정
1. 발 행 인 진아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김명호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0일
1. 지급년월일 1973년 2 월10일
1. 지 급 인 제일은행영등포지점
1. 지 급 지 성광고무공업사

---

72. 카. 18, 1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370의17

신청인 김 현 서(金 顯 瑞)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2월 1 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금304,800원정
1. 액 면 2574164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22일

1. 발행인 및 지급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본점영업부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2. 카. 18, 12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 가 193의177
신청인 조 영 숙(趙 英 淑)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2월 1 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1824222
1. 액 면 금54, 2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17일
1. 발행지 및 지급인 한일은행퇴계로지점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8, 1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곡동 24의218
신청인 김 영 자(金 映 子)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2월 1 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No가 03991609
1. 액 면 금1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9 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국민은행청계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No 다1022765
1. 액 면 금5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 9 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국민은행청계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8, 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83
신청인 유 덕 재(劉 德 財)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 7 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2월 1 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정 태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매
1. 번 호 C/1823963
1. 액 면 금1, 000, 000원정
1. 지급인 및 발행인 조흥은행용산지점
1. 발행년월일 1972년10월31일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5, 127

대구시 남구 남산동 2 구 621의 1
신청인 한 석 암(韓 石 岩)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 월13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11월29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박 헌 기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다808094
1. 액 면 금50, 000원정

19
172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대구동지점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25일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다808095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대구동지점
1. 발행년월일 1972년11월25일
1. 최후소지인 신청인

○제 권 판 결

72. 카. 9,337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119의 1
신청인 주 봉 남(周 鳳 南)

다음 기재 증권에 대하여 1972년 6월28일 공시최고 한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번호	종류	서 호	액 면	발행년월일	발 행 인	지 급 인
1	당좌수표	A662037	금3,000,000원정	미기입	합자회사한일건설공사	한국신탁은행영업부
2	〃	A662039	금3,000,000원정	〃	〃	〃
3	〃	B008113	금 800,000원정	〃	〃	한국신탁은행소공동지점
4	〃	B008117	금 700,000원정	〃	〃	〃
5	〃	159072	금 300,000원정	〃	〃	한국신탁은행영업부
6	〃	184166	금 300,000원정	〃	〃	한국신탁은행소공동지점
7	〃	HC21 No 145588	금 800,000원정	〃	〃	한일은행무교동지점
8	〃	D가 No 220255	금 200,000원정	1970. 1.20	〃	제일은행중앙지점
9	〃	HC21 No 214447	금2,000,000원정	1972. 6.27	대영상사주식회사	한일은행명동지점
10	〃	HC21 No 214448	금 80,000원정	〃	〃	〃
11	〃	HC21 No 090902	금2,000,000원정	1972. 6.16	〃	한일은행서소문지점
12	〃	HC21 No 090903	금 80,000원정	〃	〃	〃
13	〃	HC22 No 265662	금2,000,000원정	1972. 6.17	대영타이야공업주식회사	한일은행본점
14	〃	HC22 No 265663	금 80,000원정	〃	〃	〃
15	〃	HC21 No 214338	금2,060,000원정	1972. 6.22	삼립산업주식회사	한일은행명동지점
16	〃	HC20 No 195737	금 312,000원정	1972. 7. 1	전성환(全成煥)	한일은행창신동지점
17	〃	HC20 No 196808	금 306,000원정	1972. 6.23	〃	〃

번호	종류	서 호	금 액	발행년월일	발 행 인	지 · 급 인	지급년월일
18	약속어음	#324093	금 300,000원정	1972. 4.24	대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	서울은행을지로지점	1972. 6.20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
1. 수 취 인 신청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20

173

72. 카. 11, 564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동 61

신청인 엄 복 견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7 월22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6-82
1. 액 면 금2, 374, 750원정
1. 지급년월일 1971년12월29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지급인 및 발행인 삼풍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창 형
1. 발행년월일 1971년11월30일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19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 가 200의82

신청인 김 경 자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 4 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25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2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가736893
1. 액 면 금50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29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 행 인 국민은행응암동예금취급소

72. 카1. 2, 2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410의22

신청인 김 석 연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559503
1. 액 면 금100, 000원정
1. 발 행 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중랑교예금취급소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21일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3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27

신청인 차 영 남(車 榮 南)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580737
1. 액 면 금10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7월31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서울은행휘경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580738
1. 액 면 금100, 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7월31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서울은행휘경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매
1. 번 호 580739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 행 일 1972년7월31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서울은행휘경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매
1. 번 호 580740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 행 일 1972년7월31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서울은행휘경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31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2 가 23

신청인 문 한 성(文 漢 盛)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주택채권
1. 번 호 No 61호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0년 1 월28일
1. 거 치 기 간 1970년 2 월 8 일부터 1973년 2 월 8 일까지
1. 연 리 30%
1. 발행인 및 지급인 한국주택은행장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2. 카. 12, 40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7의73

신청인 최 연 규(崔 演 奎)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DI 1180958호
1. 액 면 금4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8 월 8 일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광화문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4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362의14

신청인 전 철(全 哲)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B정액507032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8 월 3 일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영업부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B정액507033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8 월 3 일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영업부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B정액507034

22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8 월 3 일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영업부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5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파동 171
신청인 박 종 찬

다음 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번 호 D/D 32(122682)
1. 금 면 금18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4 월29일
1. 발 행 인 제일은행광주지점
1. 지 급 인 제일은행서소문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5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3의 7
신청인 박 로 해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100주권
1. 번 호 6 회라7499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68년10월31일
1. 발 행 인 한국전력주식회사
1. 주주 성명 조동엽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100주권
1. 번 호 9 회라4100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4 월20일
1. 발 행 인 한국전력주식회사
1. 주주 성명 조동엽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100주권
1. 번 호 9 회라4101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4 월20일
1. 발 행 인 한국전력주식회사
1. 주주 성명 조동엽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58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0의74
신청인 김 정 자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550898호
1. 액 면 금8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7 월29일
1. 발 행 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명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 59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염동 33의 3
신청인 김 남 호(金 南 鎬)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매
1. 번 호 510920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8 월 2 일
1. 발 행 인 서울은행내자동지점
1. 지 급 인 서울은행내자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634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85의 7
신청인 안 종 록(安 鍾 錄)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매
1. 번 호 199968
1. 액 면 금7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6 월24일
1. 지급년월일 1972년 7 월23일
1. 발 행 인 김성철
1. 지 급 인 한일은행적선동지점
1. 지 급 지 서울특별시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2. 카. 12,76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 가 121
신청인 김 춘 순(金 春 順)
소송대리인변호사 손 석 도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2년 8 월18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2년11월3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제 1 회택지상환부주택가증권
1. 번 호 A종 No 가052 No. 000652
1. 액 면 금3,0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0년 8 월21일
1. 발 행 인 한국주택은행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판 결

72. 카. 12,436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527
신청인 김 완 배(金 完 培)

다음 기재 수표에 대하여 1972년 8 월16일 공시최고한 바 동 수표 등에 대하여 1972년 8 월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3 동 223의 5 신청외 이경식으로부터 권리신고가 있으므로 그 신고된 권리를 보류하고 동 수표등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2년11월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사 이 한 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4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849100	금50,000원정
849101	금50,000원정
849102	금50,000원정
849103	금5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8 월 3 일
1. 지 급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미아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공무원사망

다음 공무원이 사망하였기에 휘보한다.

1972년12월 1 일
총 무 처 장 관

소속및직위 철도청시설국시설과정차장담임
지 급 토목기좌

24

성　　명 김용학	직　　급 농촌지도관(3 을)
사 망 일 자 1972년11월20일	성　　명 송항재
비　　고 간경변증	사 망 일 자 1972년11월23일
소속및직위 충청남도연기군농촌지도소	비　　고 간성혼수

관보 제6319호 면당 단가 92전

시·도 관보총국 일람표

시도별	보급소명	소 재 지.	전 화
서 울	대한공론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75-6161-4 직통 75-6315
경 기	경기총국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3가 53번지	6139
경 남	경남총국	부산직할시 중구 보수동 1가 25번지	4-7969 4-9848
경 북	경북총국	경상북도 대구시 완전동 5번지	4-8294
전 남	전남총국	전라남도 광주시 금남동 1가 19번지	2-1185
전 북	전북총국	전라북도 전주시 고사동 1가 11번지의 14호	3767
충 남	충남총국	충청남도 대전시 선[illegible]지의 15호	2-6828
충 북	충북총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운동 48번지의 1호	2972
강 원	강원총국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145번지	3552
제 주	제주총국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 1118번지	
부 산	부산총국	부산직할시 중구 보수동 1가 25번지	4-7969 4-9848

편집 총무 처 (70) 4331
인쇄 대한공론사 (75) 6161~9

1953. 11. 3.
제 3 종우편물인가

관보

편집 및 발행 총 무 처
전 화 70—4331
인 쇄 대한공론사
대 표 전 화 75—6161~4
관보부직통 75—6315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제 6319 호(그2)

1972. 12. 4.(월)

차 례

오늘의 중요지표

○국무총리 훈령제110호(정부관리청사방화점검규정)……3

회람

2503 A—1—4
1969. 1. 31 승인

대한민국정부

190×268 신문용지 50g/m²

180

오늘의 중요지표

정부관리청사방화점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72년11월30일

국무총리 김 종 필 ㊞

◉국무총리훈령제110호

정부관리청사방화점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부관리청사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정부관리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사용·관리하는 청사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제1호 이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행정기관(각급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3. 국가관리 기업체.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관리청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방화점검책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과 그의 감독을 받는 국가관리기업체에 대한 방화점검의 책임을 진다.

②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방화점검책임에 속하지 않는 관내 각급행정기관의 방화점검의 책임을 진다.

제2장 방화점검단

제5조 (방화점검단 편성운영) ①방화점검의 책임기관은 방화점검단을 매년 1회 10월에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②방화점검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예방기획부, 방화점검부 및 평가분석부를 둔다.

③제2항의 각 부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의 반을 둘 수 있다.

1. 예방기획부에 소방계획반, 제도개선반.
2. 방화점검부에 방화 및 소화설비점검반, 경보 및 대피시설 점검반.
3. 평가분석부에 점검결과분석반, 점검기록 유지반.

④방화점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방화점검책임기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거나 피감독 기업체의 임원중에서 임명하고 부장·반장은 단장이 관계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 (방화점검단의 임무) ①예방기획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관별 소방계획의 조정.
2. 기관별 소방체제의 개선.
3. 방화점검계획의 수립.

②방화점검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화설비 (건물·화기사용시설·전기·기계설비·옥내 가연성비품)의 점검.
2. 소화설비(소화설비·소방용수의 정비)의 점검.
3. 경보설비의 점검.
4. 대피시설 및 유도설비의 점검.
5. 소방계획·위험물·특수가연성·소화활동·방화대 경비대책 점검과 기타 방화상 필요한 점검.
6. 정부관리청사의 화재시 현장조사 및 보고.

③평가분석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화점검 결과의 평가분석 및 보고.
2. 기록 유지.
3. 소방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28

제3장 방화점검

제7조 (소방계획) 소방법 제8조에 의하여 방화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에는 이 장에 의한 방화점검사항에 대한 관리계획과 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건물점검) 건물점검은 건물내외의 방화적 위치·구조·사용현황 및 건축자재·설계·옥내외의 가연성 인화물등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제9조 (화기사용시설 점검) 화기사용시설 점검은 주방시설·화기사용장소·채온용기구 및 흡연장소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제10조 (전기설비 점검) 전기설비 점검은 한국전력주식회사 및 체신부의 협조를 받아 전기기기·전기배선·구내방송설비·비상구·전화등의 통신시설·각 동력조작관·피뢰침·방연샷타의 기능 등의 예방설비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제11조 (위험물 특수 가연성 점검) 위험물특수 가연성 점검은 위험물 취급면허 소지자와 공동으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제12조 (기계설비 점검) 기계설비 점검은 각종 제어밸브·승압기류(부스타), 양수펌프·소화전용 각종 펌프·보이라·냉동기등의 베아링 과열방지와 분진의 방재등에 의한 화재위험의 제거 등의 상황에 대하여 행한다.

제13조 (소화설비정비점검) 소화설비 정비점검은 소화전·송수관·소화기·스프링 쿨러등 각 소화설비의 기능 및 장해 제거등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제14조 (소방용수 정비점검) 소방용수 정비점검은 소방용 저수조·옥내외 방화수·저수조내의 청소등의 관리에 대하여 행한다.

제15조 (경보설비 정비점검) 경보설비 정비점검은 소방설비의 검사 및 수리요원을 대동하고 자동 화재경보기·수동발신기 및 감지기 설비 등의 관리 유지에 대하여 행한다.

제16조 (대피시설·유도설비의 점검) 대피시설·유도설비의 점검은 대피계단·비상구·발코니·유도등 대피방송설비 및 구조대 설비등의 정비상태에 대하여 행한다.

제17조 (소화활동 점검) 소화활동 점검은 방화대 편성의 적정여부, 합리적인 임무부여 여부, 정기적인 방화훈련 실시 여부와 실습 및 소방규칙등의 이행상태에 대하여 행한다.

제18조 (옥내가연성 비품점검) 옥내가연성 비품점검은 청사내의 가연성 물품의 보관관리와 반입물품에 대한 규제상황에 대하여 행한다.

제19조 (방화대 경비점검) 방화대 경비점검은 청사내외의 취약점과 중요시설의 경계경비 상황에 대하여 행한다.

제4장 점검보고및조치

제20조 (보 고) ①각 방화점검책임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방화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점검실시 후 15일 이내에 총무처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보고된 내용을 평가하고 사후대책을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다.

제21조 (시정조치) 각 방화점검책임기관 및 피점검기관은 국무총리의 명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각 방화점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5장 위임규정

제22조 (위임규정)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 (준 용) 기타 방화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과 방화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9

〔별지 서식〕

기 안 번 호:

197 . .

점 검 결 과 보 고 서(종합2)

품 명								
지 적 사 항								
건물구조	세 조 층	건 평		소 유 구 분	수 용 인 원		건 축 년 월 일	
		연 건 평		국유, 공유, 사유(임차)	사 용 평 수			
냉 난 방	보 이 라			난 로			기 타	
	유 류, 석 탄, 기 타			유 류, 석 탄, 기 타.				

종별 / 구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용상 필요한 설비			기타			
	소화기	소화물통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	옥외소화전	동력소방펌프	자동화재탐지기	화재속보설치	비상경보설치	피난사다리	구조대	유도등	기타	배연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기 준 량																						
현 재 량																						
부 족 량																						

4912-5

183

34

점 검 결 과 보 고 서 (총괄2)

기관명 :

구 분	최초지적사항		금회지적사항		기타관리점검사항	비 고
	지 적	개 선	지 적	개 선		
소화계획수립및운영사항						
건물내외 가연성물 정리						
화 기 사 용 관 리						
전 기 설 비						
위 험 물 특 수 가 연 성						
기 계 설 비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대 피 유 도 설 비						
소 방 용 수 관 리						
소 화 활 동						
유 대 가 연 성 반 출 입						
기 타						

4912-6

184